



## 제 32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 귀하

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하여 제 32 기(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LF 층 보스턴 회의실(행당동, 서울숲더샵)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32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참조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2] 참조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백성환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사외이사 정재경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 주성도 선임의 건 [별첨 2] 참조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별첨 3] 참조

제 7-1 호 의안 :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 7-2 호 의안 :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제 7 호 의안 관련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일로 한다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 시간 투표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처리

####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별첨 4] 참조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 위임인(주주)의 인감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예정)일 : 2026년 3월 16일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ubcare.co.kr>) 내 ‘투자정보’ → ‘주주공고’ 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정정보고서를 공시 및 공고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오시는 길 안내

지하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호선 한양대역 1번, 4번 출구 도보 6분(서울숲 THE SHARP)</li><li>·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 9번 출구 도보 10분(서울숲 THE SHARP)</li></ul>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양대 정문 정류장 - 왕십리역 방면 121, 302, N62, N73, 2012, 2014, 2016, 2222</li><li>· 행당동 서울숲더샵 정류장 - 한양대학교 방면 성동 03-2</li><li>· 한양대앞.한양시장 정류장 - 성동소방서 방면 121, 2013, 4211</li></ul>

#### 9. 기타사항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주식회사 유비케어**  
**대표이사 김진태**  
(직인 생략)

[별첨 1] 정관 신·구 대조문

현행	개정(案)	개정사유
<p>제 1 조 (상호)</p> <p>이 회사는 주식회사 유비케어라 한다. 영문으로는 UBCARE CO., LTD.라 표기한다.</p>	<p>제 1 조 (상호)</p> <p>이 회사는 주식회사 지씨메디아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C MediAI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국·영문 혼용으로는 주식회사 GC메디아이라 표기한다.</p>	<p>사명 변경</p>
<p>제 4 조 (광고방법)</p> <p>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a href="http://www.ubcare.co.kr">www.ubcare.co.kr</a>)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 4 조 (광고방법)</p> <p>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a href="http://www.gcmidiai.co.kr">www.gcmidiai.co.kr</a>)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홈페이지 변경</p>
<p>제 9 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9 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p> <p>이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단순 문구 수정</p>
<p>제 10 조 (신주 인수권)</p> <p>① (생략)</p> <p>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li> <li>2. ~ 4. (생략)</li>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6. ~ 9. (생략)</li> </ol> <p>③ (생략)</p>	<p>제 10 조 (신주 인수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li> <li>2. ~ 4. (현행과 같음)</li> <li>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6. ~ 9.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 10 조의 2 (동등배당)</p> <p>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p>	<p>제 10 조의 2 (동등배당)</p> <p>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p>	<p>단순 문구 수정</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u>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u>이</u> 회사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u>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조문 정비</p>
<p>제 10 조의 4 (일반공모증자등)</p> <p>① (생략)</p> <p>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 10 조의 4 (일반공모증자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p>
<p>&lt;신설&gt;</p>	<p>제 10 조의 6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p> <p><u>회사는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u></p>	<p>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근거 마련</p>
<p>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p> <p>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u>둘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p> <p>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u>둔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 13 조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lt;삭제&gt;</p>	<p>제 13 조 (기준일)</p> <p>① <u>이</u>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② <u>이</u>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p>	<p>상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단순 문구 수정</p>

	다.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 7.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p>제 21 조 (의장)</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21 조 (의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u>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u> <u>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p>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p> <p><u>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u></p>	<p>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p> <p><u>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u></p>	상법에 따른 조문 정비
<p>제 25 조 (의결권 불통일행사)</p> <p>① (생략)</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 25 조 (의결권 불통일행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u>주식의 신탁을</u>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단순 문구 수정
<p>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p>제 29 조 (이사의 수)</p> <p><u>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u></p>	<p>제 29 조 (이사의 수)</p> <p>① <u>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u></p> <p>② <u>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u></p>	상법 개정 및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생략) ②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u>분업</u>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u>분장</u>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단순 문구 수정
제 34 조의 3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 34 조의 3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 및 주주</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4 조의 4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u>보수 한도</u>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생략)	제 34 조의 4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u>보수</u>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u>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u> ③ ~ ④ (생략)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u>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의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회의 의장은 <u>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상법 및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5 조의 4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5 조의 4 <삭제>	실무 운영 현실 반영 및 의사결정 신속성 제고
제 37 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 ④ (생략) ⑤ 제 3항·제 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u>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u>	제 37 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u>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p>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40 조의 1 (이사, 감사의 책임)</p> <p>① (생략)</p> <p>② 전항에 따른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 감사의 책임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 40 조의 1 (이사, 감사의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항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또는 2026년 7월 23일 이후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단순 문구 수정</p>
<p>제 42 조 (재무제표등의 작성 등)</p> <p>① ~ ③ (생략)</p> <p>④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u>부본</u>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략)</p>	<p>제 42 조 (재무제표등의 작성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u>등본</u>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략)</p>	<p>단순 문구 수정</p>
<p>제44조의 2 (분기배당)</p> <p>① ~ ② (생략)</p> <p>③ <u>중간배당의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1. ~ 5. (생략)</p> <p>6. <u>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용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u></p> <p>④ &lt;삭제&gt;</p>	<p>제44조의 2 (중간배당)</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용하여야 할 이익준비금</u></p> <p>④ &lt;현행과 같음&gt;</p>	<p>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p>
<p>&lt;신설&gt;</p>	<p><u>부 칙</u></p> <p>1. <u>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0조의1 제2항의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2027년 7월 23일까지 충족하여야 한다.</u></p>	<p>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p>

※ 기타 참고사항

- 제10조의6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관련, 본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 후 실제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른 정관 세부 문구 변경은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별첨 2] 이사 및 감사 후보자

※ 이사 후보자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백성환	1971.03.15	사내이사 후보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정재경	1983.03.13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2. 후보자 주된 직업 / 세부경력(최근 10년)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백성환	(주)유비케어 약국사업본부장	2025.03~현재	(주)유비케어 약국사업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2020.08~2025.02	(주)유비케어 약국사업유닛장	
		2016.01~2020.07	(주)유비케어 약국사업파트장	
정재경	Anchor Equity Partners Asia, Director	2024.09~2025.09	Anchor Equity Partners Asia, Director	해당사항 없음
		2017.08~2024.09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Investment Banking Director	
		2011~2015	우리투자증권 과장	

※ 감사 후보자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주성도	1956.07.17	감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2. 후보자 주된 직업 / 세부경력(최근 10년)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주성도	(주)유비케어 감사	2015.12 ~ 현재	(주)유비케어 감사	해당사항 없음
		2012.12 ~ 2015.03	SCI 평가정보(주) 대표이사	

[별첨 3]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서

1.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 '26년 3월 24일 현재 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보통주 1,413,299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목	보유 대상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413,299주	보통주 50,000주 <sup>(*)</sup> (최대 범위 내에서 추후 이사회 결정 예정)
취득 방법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실제 처분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직원 보상 : '25년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된 주식수를 고려
- 실제 처분수량이 예상수량보다 적어 남는 주식의 있으면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도의 보유처분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임.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항 목	보유 개시시점	처분시점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 방법	보통주 1,413,299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보통주 1,363,299주 <sup>(*)</sup>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50,783,840주	보통주 50,833,840주 <sup>(*)</sup>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보통주 2.71% <sup>(*)</sup>	보통주 2.61% <sup>(*)</sup>

\* 위 나.항에 따라 실제 처분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2026년 3월 24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 \* 당사 임직원 보상 지급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3월 24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 \* 당사 실제 처분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 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전략적 사업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 구조 개선

###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 '26년 3월 24일 현재 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보통주 1,413,299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목	보유 대상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413,299주	보통주 1,363,299주 <sup>(*)</sup> (최대 범위 내에서 추후 이사회 결정 예정)
취득 방법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실제 처분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분수량이 예상수량보다 적어 남는 주식이 있으면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도의 보유처분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임.

###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항 목	보유 개시시점	처분시점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 방법	보통주 1,413,299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보통주 50,000주 <sup>(*)</sup>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50,783,840주	보통주 52,147,139주 <sup>(*)</sup>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보통주 2.71% <sup>(*)</sup>	보통주 0.10% <sup>(*)</sup>

\* 위 나.항에 따라 실제 처분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동 가능

###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2026년 3월 24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3월 24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 3. 자기주식 보유 개시시점 및 처분 완료시 자기주식 현황

항 목	보유 개시시점		처분시점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달성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 방법	보통주 50,000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보통주 1,363,299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보통주 0주 <sup>(*)</sup>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 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50,783,840주		보통주 52,197,139주 <sup>(*)</sup>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보통주 2.71% <sup>(*)</sup>		보통주 0% <sup>(*)</sup>

\* 실제 처분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동 가능

- 현 시점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과 위 나.항의 처분 대상 수량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26년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 매입 또는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량만큼 증가(매입의 경우) 또는 감소(소각의 경우) 가능

#### ※ 기타 사항

- 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일로 한다.
-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함.

## 위 임 장

위임받을자(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주)유비케어의 제3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주주) 성 명 : (인)

생년월일 :